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사업소 설치 및 운영 부적정(과장급 기구)

기 관 명 고령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에는 사업소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課)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동 규정 제6조 제4항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령군 지역활력단의 경우 본청에 소재하고 있어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기구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청 직제로 편입하거나 설치 요건에 맞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울릉군 대외협력사무소의 경우에도 본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소 설립요건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업무량 및 통솔범위 측면에서도 본청 팀장급(6급)이 관장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직급조정이 필요하다.

< 사업소 설치·운영 부적정 사례 >

시·군	사업소명 (설치일)	정원 (현원)	주요 기능	사업소 요건 미흡 사항 (관련 규정)
고령	지역활력단 (6급) (’21.4.23.)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 • 마을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가 市 본청 내 소재
울릉	대외협력 사무소(5급) (’20.1.1.)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부처 등 협력업무 • 국비확보, 특산물 홍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가 市 본청 내 소재 • 업무량(정원 5명) 등 5급 규모에 부적합(기구정원규정 제6조)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사업소 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하고 법령상 사업소 설립요건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기관명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울릉군

내 용

과(課)는 보조기관의 최소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1.6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과 단위의 평균 정원은 22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 등 5개 시·군은 일반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 정원을 12명 미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량과 통솔범위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정·현원이 12명 미만 부서(課) 운영 현황 >

지자체명	실·국	과명	정원	현원
포항	-	서울사무소(5급)	4	4
경주	도시개발국(4급)	폐철도활용사업단(5급)	8	8
	-	서울사무소(5급)	5	4
김천	-	서울사무소(5급)	5	2.5
구미	경제지원국(4급)	스마트산단과(5급)	9	8
	-	서울사무소(5급)	4	3
울릉	-	대외협력사무소(5급)	5	4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구미시장, 울릉군수께서는

정원이 12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과·담당관에 대하여 적절한 기능을 보강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장기간 임시조직(TF)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청송군, 칠곡군

내 용

임시조직(TF)은 행정기구로 편제할 만큼의 상시적 업무가 아닌, 단기적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 단기간 역할 수행 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포항시 등 6개 시·군의 경우 임시조직(TF) 설치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 행정기구로 전환하거나 해당 임시조직을 해체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임시조직(TF) 형태로 운영하는 등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구미시장, 청송군수, 칠곡군수께서는

1년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조직(TF)에 대하여는 기구설치기준에 부합하게 폐지 또는 직제에 반영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붙임】

< 1년 이상 임시조직(TF) 운영 현황 >

지자체명	임시조직(TF) 명	소속	TF 구성원	TF 설치일 (기간)	비고
포항시	스마트재생TF (6급)	도시재생과	(4명) 6급 1, 7급 이하 3	'18.9.10. (3년 4개월)	
	트라우마치유TF (6급)	방재정책과	(2명) 6급 1, 9급 1	'18.3.2. (3년 9개월)	
	도시재건TF (6급)	안전도시사업과	(2명) 6급 1, 9급 1	'19.1.14. (2년 11개월)	
	방재인프라TF (6급)	주거안정과	(3명) 6급 1, 7급 이하 2	'18.3.2. (3년 9개월)	
	홍해지적재조사TF (6급)	복구청 민원토지정보과	(2명) 6급 1, 7급 1	'20.7.1. (1년 4개월)	
경주시	동아시아문화도시TF (6급)	문화예술과	(5명) 6급 1, 7급 이하 4	'20.1.6. (1년 11개월)	
	사적지정비TF (6급)	문화재과	(2명) 6급 1, 9급 1	'19.7.10. (2년 4개월)	
	3대 문화권TF (6급)	관광컨벤션과	(2명) 6급 1, 7급 1	'14.1.1. (7년 11개월)	
	수질연구실TF (6급)	에코물센터	(3명) 6급 1, 7급 2	'17.7.1. (4년 4개월)	
김천시	여성개발팀 (전문경력관)	평생교육원	(2명) 전문 경력관 1, 9급 1	'12.1.1. (9년 11개월)	
	관리시설TF팀 (6급)	의회사무국	(4명) 6급 1, 7급 이하 3	'20.1.1. (1년 11개월)	
	기후변화대응TF팀 (6급)	환경위생과	(3명) 6급 1, 7급 이하 2	'19.7.10. (2년 4개월)	
구미시	혁신지구TF (6급)	도시재생과	(2명) 6급 1, 7급 1	'20.7.15. (1년 4개월)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TF (6급)	주민행복과	(1명) 6급 1	'14.7.1. (7년 5개월)	
	체육레저시설조성TF (6급)	총무과	(2명) 6급 1, 8급 1	'19.7.1. (2년 4개월)	
칠곡군	문화도시TF (6급)	문화관광과	(2명) 6급 1, 7급 1	'19.4.1. (2년 8개월)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사업소 하부직제 기능 중복 등 조직 운영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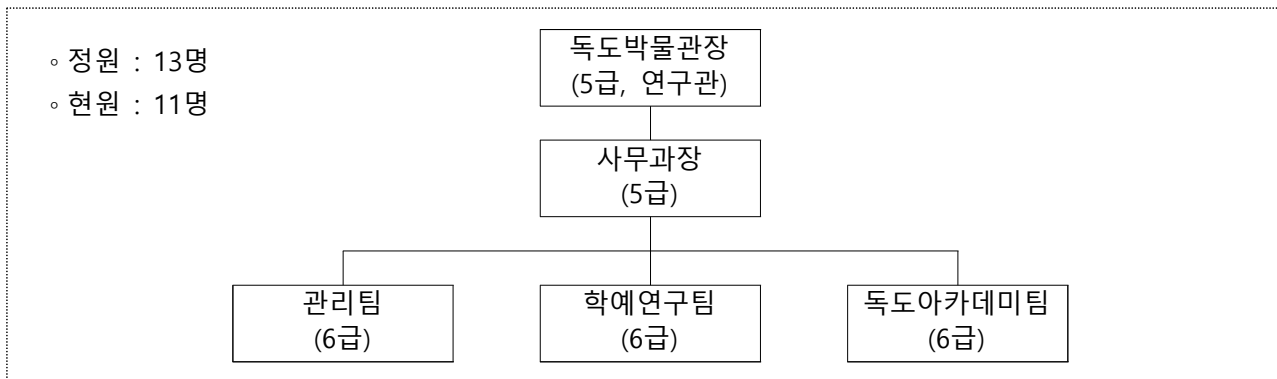
기 관 명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사업소)의 경우 조직을 총괄하는 과장급 사업소장(박물관장) 하부조직으로 과장직위(사무과장)를 추가 운영하여 사실상 사업소장과 통솔범위 및 기능을 중복 운영하고 있고, 계서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아 추후 조직 개편 시 과장직위 통합 등 개선이 필요하다.

<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소장과 하부조직 운영 현황 >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께서는

계서체계에 부합하고,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과장직위 통합 등 조직을 정비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포항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 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고, 동 규정 별표2의3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두되, 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시·군에서 위반사례가 확인되었다.

① 김천시, 영덕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본청 농정관련 부서 통폐합시 ‘해당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만 복수직렬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무관한 과에 대해서도 일반직·지도직 복수직렬을 책정하고 있고, ② 영덕군, 봉화군의 경우 소장 정원에 대하여 하부 과장과 같은 일반직 직급을 책정하는 등 계서체계에 맞지 않게 정원을 책정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③ 아울러 포항시, 영주시, 영천시의 경우 본청 농정부서와 통합과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장직위 정원에는 농촌지도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일부 누락하여 상기 법령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김천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영덕군수, 고령군수, 봉화군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사무 및 과장의 정원이 법령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농업기술센터 기구정원 관리 부적정 사례 >

명칭 (설치일)	소장·부서장 직급·직렬			개편방향	비고
	직위	정원	현원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00.7.27.)	소장	행정·기술4·농촌지도관	행정4급		’11.8.9. 본청 농축산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농촌지원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축산과장	행정·농업·수의5	농업5급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농식품유통과장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행정5급		
	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95.1.1.)	소장	행정·기술4·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07.11.8. 본청 농축산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농식품유통과장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축산과장	농업·수의5·농촌지도관	수의5급		
	농촌지도과장	농업5 ·농촌지도관	농업5급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기술지원과장	농업5 ·농촌지도관	농업5급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95.1.1.)	소장	행정·기술4·농촌지도관	행정4급		’03.10.21. 본청 농정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농업5	행정5급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축산과장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기술지원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95.1.1.)	소장	행정·기술4·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01.7.31. 본청 농축산과, 산업유통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농업5	농업5급	농촌지도관 복수직렬 책정 원칙 → 지도관 정원 추가	
	과수한방과장	행정·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축산과장	행정·농업·수의5·농촌지도관	농업5급		
	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양호)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15.11.11)	소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직렬 불일치	’15.1.1. 본청 농정과와 통합
	농축산과	행정5·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농업기술과	농업5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통합과 무관 → 지도관 단수	
	농촌지원과	농업5·농촌지도관	농업5급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62. 4.)	소장	행정·농업·복지5 ·농촌지도관	농업5급	계서체계 위반 → 센터장이 일반직 복수직렬 이면 하부과장 지도관 단수여야 하며, 센터장이 지도관 단수이면 하부과장 일반직 복수직렬 가능	’12.7.1. 본청 산업산림과와 통합
	농업정책과장	행정·농업5 ·농촌지도관	행정5급		
	기술보급과장	행정·농업5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산림휴양과장	행정·농업·복지5 ·농촌지도관	행정5급		
	축산농기계과장	행정·농업5 ·농촌지도관	농업5급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03.11.11.)	소장	행정5·농업5 ·농촌지도관	행정5	계서체계 위반 → 센터장이 일반직 복수직렬 이면 하부과장 지도관 단수여야 하며, 센터장이 지도관 단수이면 하부과장 일반직 복수직렬 가능 ※ 미래농업과장 : 직렬 불일치	’03.11.11 본청 산업경제과와 통합
	농정축산과장	농업5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		
	유통특작과장	농업5 ·농촌지도관	농업5급		
	미래농업과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포항시, 김천시

내 용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 제14조, 별표2 및 별표3에 의하면 시·도 소속 3급 공무원은 실·국·본부장(시·군·구의 경우 4급)에, 4급 공무원은 담당관·과장(시·군·구의 경우 5급)에 상당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정원에 부합하도록 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5급 이하는 시·도에서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포항시, 김천시는 기관 내 중요보직을 수행하여야 할 간부급(국·과장급) 공무원을 장기간 별도정원(결원보충) 승인 없이 외부기관에 파견하였고, 이에 따른 결원 직위는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직무대리 제도는 상위직위의 직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식 직위의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사상 임용행위와는 달라 전보 또는 승진임용으로의 운영이 제한되는 데도 상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차하급자를 해당 국·과장 직위에 승진개념으로 인사발령 및 직무를 수행케 하는 등 부적정 인력 운영을 장기간 지속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하급자의 정원을 이용해 간부급(국·과장급) 직위를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상화 계획 마련 등 조속한 시정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김천시장께서는

간부급 공무원을 장기간 비별도 파견 후 결원되는 직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직무대리 운영을 지양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비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부적정 >

지자체명	비별도 파견 현황			직무대리자 직급
	직급	파견기관(직위)	파견기간	
경상북도	3급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장)	'19.1.1 ~ '19.12.31. '21.1.1 ~ '21.12.31.	4급
	4급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대국경북통합지원과장)	'14.11.6 ~ '15.7.2. '21.1.1. ~ '22.6.30.	5급
		경북대학교 (협력관)	'11.1.24. ~ '11.6.30. '18.8.20. ~ '18.11.29. '20.7.1. ~ '22.6.30.	"
		안동대학교 (협력관)	'19.1.1. ~ '19.6.30. '19.7.5. ~ '20.1.1. '20.7.1 ~ '20.12.31. '21.3.2 ~ '21.3.15. '21.7.1 ~ '22.6.30.	"
포항시	5급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기획팀장)	'15.1.1. ~ '15.7.19. '15.1.1. ~ '18.7.9. '19.1.1. ~ '20.6.28. '21.1.1. ~ '22.6.30.	6급
		포항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장)	'05.2.21. ~ '07.1.31. '11.2.28. ~ '12.1.18. '13.1.2. ~ '18.1.22. '18.2.22. ~ '22.6.30.	"
		포항문화재단 (사무국장)	'17.7.1. ~ '18.6.30. '20.7.1. ~ '22.6.30.	"
김천시	4급	금오공과대학 (협력관)	'16.8.1. ~ '17.6.30. '18.1.1. ~ '18.12.31. 19.1.1. ~ '19.6.29. '20.7.1. ~ '21.6.30.	5급

※ 실무인력(주무관급 :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 제외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외부 기관 파견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으로 책정 및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정원은 정원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의 정원 관리기관은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5급 이하는 시·도에서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결원보충(별도정원) 승인을 받아 파견하거나, 결원보충 지침 상 승인이 어렵거나 결원보충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인력운영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자원을 현원 파견하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하면서 결원보충 승인 없이 해당 정원자체를 관련되는 부서의 정수에 포함하여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결원보충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및 결원보충 제도를 우회하여 해당 직급의 정원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므로 부적정하게 반영된 정원의 삭감 등 시정이 필요하다.

< 외부 파견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으로 책정한 사례 >

지자체명	파견현황			정원책정		
	파견기관명	직급	담당사무	부서	직급	반영일자
경북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사무국	부장	· 기획홍보업무 총괄조정 ※ 파견기간(비별도) : '14.1월(최초) ~ 현재	정책기획관	행정5급	'17. 9. 18.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직무과건 절차 준수 및 소속 직원의 정원 책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에 대한 파견인력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으로 직속기관(§113), 사업소(§114), 출장소(§115), 합의회행정기관(§116), 자문기관(§116의2)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6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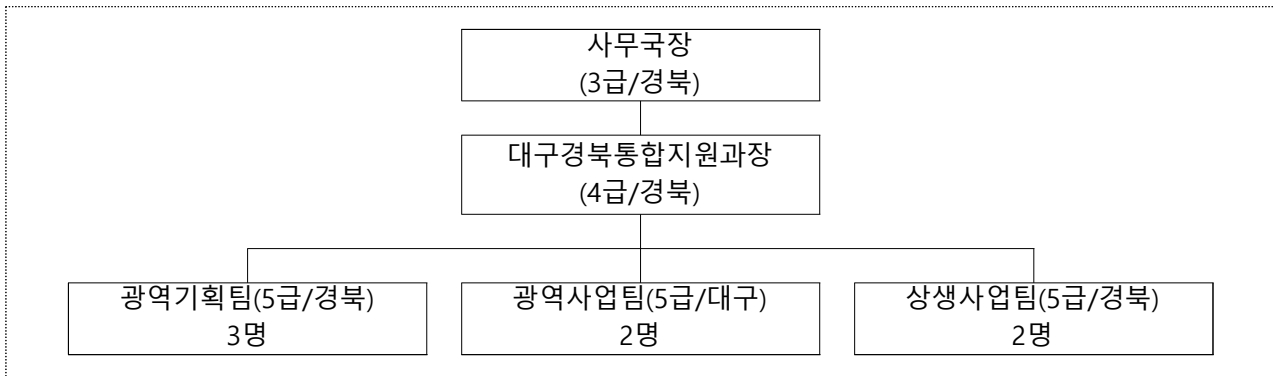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로, 동법 제153조에 의하면 행정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는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각각의 조례(「경상북도 경북대구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를 근거로 대구·경북 양 지역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문기구 성격의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별도 사무국(3급)을 구성, 소속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자문기구로 볼 수 있으나 양 기관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어 기구정원 규정상 한 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립 방식 면에서도 규약 제정 등을 통해 설립되는 행정협의회와도 다르다. 동 위원회의 기구성격을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기구 설치 및 인력 운영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사무기구를 임의로 설치, 양 소속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동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절한 추진방식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개선권고)

<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 현황 >



위원회명 (설립일)	직급	직위	소속	별도정원 여부	비고
계	9명				
대구경북한뿌리 상생위원회 (14.11.25.)	3급	사무국장	경상북도	비별도	
	4급	대구경북통합지원과장	경상북도	비별도	
	5급	광역기획팀장	경상북도	별도정원	
	"	광역사업팀장	대구광역시	별도정원	
	"	상생사업팀장	경상북도	별도정원	
	6급	주무관	경상북도	별도정원	
	"	주무관	경상북도	별도정원	
	"	주무관	대구광역시	별도정원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직무파견 및 결원보충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기 관 명 울진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고, 동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울진군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서관 인력에 대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을 복수로 부여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하였다.

< 별정직·일반직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

지자체명	부서명	직급	담당사무
울진군	행정지원과	행정·별정6급	• 비서 업무

조치할 사항

울진군수께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렬 정원을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등 법령에 부합토록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및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5급 이상 정·현원 직급·직렬 불일치

기 관 명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 봉화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서는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 현재 경상북도 산하 시·군의 직급별 정·현원을 확인한 결과, 상기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해당 기능에 부합토록 정원 재책정 또는 현원 재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성주군수, 봉화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포항시	구룡포읍장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5급	사회복지5급	
	호미곶면장	행정·농업·보건·해양수산5급	시설5급	
	송라면장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5급	시설5급	
	기계면장	행정·농업·녹지5급	공업5급	
	기북면장	행정·농업·녹지·시설5급	농촌지도관	
	중앙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5급	공업5급	
	우창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5급	녹지5급	
	여성가족과장	행정·사회복지5급	공업5급	
	정수과장	행정·공업·시설5급	환경5급	
	녹지과장	녹지5급	시설5급	
	남구 건설교통과장	공업·시설5급	행정5급	
경주시	천북면장	행정·농업·공업5급	녹지5급	
	황오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5급	시설5급	
	황남동장	행정·사회복지·농업5급	시설5급	
	공보관장	행정·시설5급	사회복지5급	
	아동청소년과장	행정·사회복지5급	의료기술5급	
김천시	남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농촌지도관	
	봉산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사회복지5급	
	조마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농촌지도관	
	자산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5급	시설5급	
	대곡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5급	농업5급	
	총무새마을과장	행정5급	농업5급	
	문화예술회관장	행정5급	사서5급	
안동시	용상동장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5급	공업5급	
	의회사무국장	행정4급	기술4급	
구미시	산동읍장	행정·농업5급	환경5급	
	지산동장	행정·농업5급	시설5급	

지자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구미시	도량동장	행정·사회복지5급	보건5급	
	신평1동장	행정·시설5급	공업5급	
	비산동장	행정·공업·환경5급	시설5급	
	기업지원과장	행정5급	공업5급	
영주시	이산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공업5급	
	순흥면장	행정·농업·보건5급	시설5급	
	영주1동장	행정·사회복지·보건5급	간호5급	
	영주2동장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의료기술5급	
	가흥1동장	행정·사회복지·농업5급	보건5급	
영천시	공원관리사업소장	행정·녹지·시설 5급	농업5급	
군위군	소보면장	행정·농업·녹지·환경5급	수의5급	
	민원봉사과장	행정·시설5급	사회복지5급	
	문화관광과장	행정·시설5급	농업5급	
	공항추진단장	행정·시설5급	농업5급	
	건강증진과장	보건·의료기술·간호5급	행정5급	
의성군	안평면장	행정·농업·녹지·시설5급	사회복지5급	
	홍보소통담당관	행정5급	보건5급	
	경제투자과장	행정·공업·시설5급	사회복지5급	
	의성조문국박물관장	행정·학예연구관 5급	간호6급	직무대리
청송군	부남면장	행정·농업·보건5급	시설5급	
	안덕면장	행정·사회복지·시설5급	서기관	
	주민행복과장	행정·사회복지5급	시설5급	
	종합민원과장	행정·시설5급	4급	
	건강증진과장	행정·보건·간호5급	농업5급	
성주군	성주읍장	4급·행정·농업·시설5급	환경5급	
봉화군	의회사무과장	행정5급	농업5급	
	의회전문위원	행정5급	보건5급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장	농촌지도관	농업5급	
	기술보급과장	농업5·농촌지도관	행정5급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예천군, 고령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하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지도직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외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 산하 일부 시·군에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농촌지도관을 읍·면·동장 직위 등에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등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농촌지도직공무원 정·현원 운영 사례 >

지자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포항시	기북면장	행정·농업·복지·시설5급	<u>농촌지도관</u>	
경주시	동궁원장	행정5급·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김천시	남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u>농촌지도관</u>	
	조마면장	행정·농업·시설5급	<u>농촌지도관</u>	
	구성면장	행정·농업·보건5급	<u>농촌지도관</u>	
예천군	곤충연구소장	행정·농업5급·농업연구관· <u>농촌지도관</u>	행정5급	
고령군	개진면 산업담당	행정·농업·사무운영6급· <u>농촌지도사</u>	농업6급	

조치할 사항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예천군수, 고령군수께서는

농촌지도직공무원과 관련한 정원 책정 및 현원 배치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직공무원의 복무범위를 준수하도록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 미증원

기 관 명 영양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17년 하반기부터 현장서비스 확충 로드맵에 따라 현장 인력 중심의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도별 기준인건비 산정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적시성 있는 대처를 위해 인력증원분(국가정책수요)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인력증원은 국가현안의 효과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7년 하반기 ~ '21년간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경상북도 및 시·군에 대한 증원내역을 점검한 결과 일부 군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해당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

< 국가정책 수요인력 미증원 현황 >

지자체	연도	분야	증원목표 인력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미증원 인력
영양군	2019	개인소득세	1	1
	2021	사회적경제	1	1
		한국형뉴딜	1	1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께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적정인력 증원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는 '23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국가정책 소요인력 기준인건비 반영분에 대한 미증원 인력 3명에 상응하는 기준인건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자체 개선조치)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기 관 명 경주시, 경산시

내 용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담당 인력을 2018년도~2020년도 기준인건비에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017.12.29., 2018.12.20., 2019.10.02.)하였고, 이와 관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과 세부추진요령, 매뉴얼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2018.05.04., 2019.04.29., 2020.03.04.)하였으며,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해당 인력을 배정 취지에 맞게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지침에 따른 경상북도 산하 시·군의 확충인력 중 일부는 임용 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세부내용 : 붙임)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 경산시장께서는

기 배정된 인력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경상북도 산하 시·군 주공사업 추진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사례 >

자치 단체명	확충인력			배치당시 담당업무	비고
	정원조례 개정일	부서명	성명		
경주시	2019. 5.14.	양북면	김OO	청소행정, 환경행정, 정화조 설치 및 준공, 세외수입관리, 체납세 징수	
	2019. 5.14.	중부동	엄OO	제증명, G4C, 무인발급기	
	2019. 5.14.	불국동	백OO	민방위, 보안등, 교통행정(이륜차), 청소년, 평생학습	
	2019. 5.14.	보덕동	이OO	경제정책,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자원순환, 환경, 교통일반	
경산시	2017.12.28.	하양읍	박OO	교통행정, 축산방역, 농정유통, 농촌진흥	
	2020. 9.17.	서부2동	최OO	교통행정, 농축산, 문화관광, 종량제봉투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예방감찰 인력 미배정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소방감찰규정」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직무와 복무기강 및 재난대응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업무전반에 대한 사무와 직무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성 요인을 제거하는 감찰활동을 규정하고, 「소방조직 표준직제 운영지침」에서는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 이상인 시도에는 소방감사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소속 소방공무원 증가에 따른 비위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방정책의 공정성 제고와 부조리 예방을 위해 소방본부 예방감찰 인력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을 요구하여 2020년에 3명을 확보하였으나 감찰업무에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현장인력으로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재난대응 지휘권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공직기강 확립에 필요한 감찰활동 등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된 예방 감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당초 배정받은 취지대로 인력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소방서 하부기구 설치(명칭)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소방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하고, 지역별로 소방기관의 명칭과 기능이 달라서 발생하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와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소방서의 하부조직 설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소방서 하부기구로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구조구급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있는데,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대응총괄, 구조, 구급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기구 명칭을 119재난대응과로 정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 19개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과로 하고 있어 소방서 하부기구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와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소방서 하부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소방기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유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결원보충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내 용

행정안전부는 '08년에 '시도 결원보충(직무파견) 업무처리 안내' 지침을 통해 결원보충 승인의 원칙과 절차를 지자체에 통보한바 있다.

동 지침에 의하면 비영리법인 파견의 경우,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인정되나, 기관의 설립 초기에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및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원보충 검토사항으로 파견 필요성, 기능 및 업무량, 직급 적정성, 통솔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설립 이후 23년 이상 경과하여 조직 안정화 등 행정기관이 관여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북테크노파크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상주시, 구미시는 관내 대학교에 일반적인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기관 내 중요 직위를 수행하여야 할 과장급(5급)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지역에 필요한 인재양성,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지자체와의 교류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학에 지자체 간부급을 파견하고 결원보충 승인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 내 정식 직제가 아니며 업무 및 역할 또한 불분명한 협력관 직위에 업무량 및 통솔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과장급을 파견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므로 협의체 구성, MOU 체결 등 파견 이외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별도 사무기구를 둘 수 없는 자문기구 성격의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에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파견 및 결원보충 승인하고 있는 바, 동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결원보충 승인 부적정 운용 사례 >

지자체명	기관명 (설립일)	최초파견일	파견 및 결원보충 인원	파견자 주요 역할
경상북도	(재)경북테크노파크 (’98.8월)	’19.7.26.	1명 (경북 6급 1) * 협력관	◦ 경북 혁신아카데미 사업단 관리 ◦ HuStar사업 공동예산 운영 및 관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08.3월)	’18.4.9.	1명 (상주시 5급 1) * 협력관	◦ 지역 및 대학 상생발전 모색 ◦ 관·학 추진사업 상호협력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03.9월)	’20.1.6.	1명 (구미시 5급 1) * 협력관	◦ 지역 상생 협력프로젝트 추진 ◦ 市·대학·기업체 간 정책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대구경북한뿌리 상생위원회 (’14.11월)	’15.1.23.	4명 (경북도 5급 2, 6급 2)	◦ 대구경북 통합지원 업무총괄 ◦ 시도 상생사업 업무 총괄 ◦ 조례 및 운영 규정 제·개정 ◦ 대회협력 업무 등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께서는

결원보충 승인 업무처리 요건·절차 준수 및 비영리법인 등 외부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파견을 지양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기 관 명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 기능·인력 재배치 기준 >

- ① (기능) 지원기능, 쇠퇴기능에서 **핵심 및 신규사업 기능***으로 재배치
* 예시 : 도시개발·산단 조성 등 신규 행정수요 급증 분야, 지역별 특화 역점과제·국제행사 등 지역현안 분야,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법령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분야
- ② (현장) 본청 또는 감독부서에서 **읍면동, 일선 서비스 현장**으로 재배치
- ③ (서비스 편차) 인력 부족으로 안전·복지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있는 **현업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재배치
- ④ (근로시간) 공직내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적정 배치**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의 1% 이상을 재배치 대상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재배치를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속해서 2년 이상 목표치 미만 실적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기능·인력 재배치 미흡 사례 >

연번	지자체명	재배치 달성률(%)			비고
		'18년	'19년	'20년	
1	영주시	0.20	0.40	0.57	2년이상 1%미만
2	문경시	0.11	0.76	0.22	"
3	경산시	0.59	0.25	0.16	"
4	의성군	1.33	0.83	0.78	"

5	청송군	-	0.95	0.19	"
6	영양군	1.06	-	-	"
7	영덕군	-	2.22	-	"
8	청도군	-	1.00	0.49	"
9	봉화군	0.17	-	0.16	"
10	울릉군	-	-	0.75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봉화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 분야의 인력을 일선 현장 및 신규 핵심사업 분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경주시

내 용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담당관 직위에 예산의 범위(기준인건비)에서 정원 외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는 전문임기제 직위를 운영할 경우 보조기관으로 혼동될 수 있는 '실·국·과장 등'의 직위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조직도에 해당 직위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비협의 직위(시·도 4급 이하, 시·군·구 5급 이하)에 대한 무리한 신설 및 보조기관으로의 전환 운영 등을 경계하고, 성과 및 보수 책정 등 운영현황을 주민 대표기구인 지방의회로부터 관리 및 통제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상북도는 재정특별보좌관·사회소통보좌관을 전문임기제(가급)로 운영하면서 사무실 배치도 및 대외직명 등에 '재정실장 및 사회소통실장'으로 표기하고 있고, 경주시는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시장 보좌직위로 전문임기제(나급)를 운영하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에 '정무실장'으로 직위명칭을 부여하는

등 보조기관과의 혼동 소지 및 전환 운영 등을 경계하는 조직관리 지침을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께서는

지침에 따라 전문임기제 직위 명칭을 보조기관과 혼동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행정안전부

시정요구

제 목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내 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6~‘20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세부 정비방안으로는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 후 실효성·안전 특성 등에 따라 위원회 폐지,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조례 등 근거규정 개정·폐지 포함)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 사실상 비상설 운영하는 경우(위원 미구성 포함)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상설 운영 명시 필요
※ 조문(예시) : 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후 자동해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존속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기와 같이 정비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상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		13
	소비자정책위원회		○		19
	블록체인특별위원회			○	32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13
	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			○	9
	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			○	10
	도청이전신도시건설자문위원회			○	37
	원자력클러스터추진위원회			○	26
	향토음식육성위원회			○	12
포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	14
	낙시통제구역심의위원회			○	13
	기초연금심의위원회		○		7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	11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	13
	한옥건축 지원위원회			○	1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20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	10
	농산물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		7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5
경주시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	19
	경주시식생활교육위원회			○	11
	경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			○	1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경주시	경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15
	동리목월문학관운영위원회			○	15
	경주시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	7
	공간정보 보안심의 위원회			○	10
	경주시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		○	7
	보안심사위원회	○			12
김천시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			○	7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	15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	11
	산업입지심의회		○		13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	10
안동시	안동시면책심의회			○	6
	안동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			○	7
	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			○	20
	안동시지식재산진흥위원회			○	11
	안동시아동급식위원회			○	9
	안동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	8
	안동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	10
	안동시성희롱심의위원회			○	6
	안동시녹색성장위원회			○	-
	안동시 미래위원회			○	23
	안동시 유료광고심의위원회			○	10
	안동운천자문위원회			○	12
	지역건설산업협의회			○	13
안동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8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안동시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5
	폭염·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	7
	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	9
	농수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	10
	안동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	10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	9
	국제화추진협의회			○	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자문위원회	○			9
	농업농촌발전협의회			○	26
	농특산물공동상표위원회			○	17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			○	6
	물재이용관리위원회			○	15
	농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			9
	안전도시위원회			○	22
	안전도시실무위원회			○	49
영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	14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	12
	환경보전자문위원회		○		14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	15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	11
	노사민정협의회		○		13
	산학연합동연구 개발사업 심의위원회			○	10
	보건의료심의위원회			○	15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영주시	지역아동센터지원위원회			○	8
	경북대학교 협력 농업선진화 기술개발 연구소 운영위원회			○	0
	콩세계과학관운영위원회			○	14
	영주한우육성위원회			○	10
	농업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			○	9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	6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13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12
	지역정보화협의회			○	10
	공공조형물위원회			○	20
	농공단지입주기업대책위원회			○	0
	면책심의회			○	7
	범죄예방환경설계위원회			○	20
영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5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		5
	아동급식위원회			○	11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10
	통합사례관리솔루션위원회			○	11
상주시	청렴자문위원회		○		5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	1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30
문경시	문경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7
	문경시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	5
	문경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	1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문경시	문경시아동급식위원회			○	8
	문경시문화유산보호위원회			○	7
	문경시산업입지심의회		○		10
	문경시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	13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6
	문경시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	10
	문경시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	6
	문경시쌀종합대책위원회			○	13
	문경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	14
	문경시안전관리자문단		○		12
	문경시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	7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	10
	경산시	청년정책위원회			○
지역치안협의회				○	15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	7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8
환경심의위원회			○		9
아동·여성보호인권연대위원회				○	10
가정·성폭력지원상담소 선정심의위원회				○	6
생명존중운동위원회				○	10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	13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	8
	군위군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	30
	평생학습운영위원회			○	11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군위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9
	물가대책위원회			○	12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	6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	3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역협의회			○	10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15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10
의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			10
	발전협의회		○		21
	미래기획위원회			○	37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9
	지역정보화위원회			○	10
	상징물관리위원회			○	15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	9
	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			○	10
	주민투표청구심의회			○	9
	산수유보호육성관리위원회			○	13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	6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	7
	의성군산운생태공원자문위원회			○	10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15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	13
	물가대책실무위원회			○	10
	내수면어업조성협의회			○	6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의성군	농수산물브랜드심사위원회			○	15
	가을빛고운브랜드장류등식품제조가공시설 운영위원회			○	7
	안전관리자문단		○		11
	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	10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	7
	대행업체평가및평가위원회			○	10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청송군	경관위원회		○		15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12
	규제개혁위원회			○	10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		10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		○		6
	문화상추진위원회			○	12
	물가대책실무위원회			○	10
	물가대책위원회			○	15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6
	영양군	군정조정위원회			○
면책심의회				○	7
주요업무평가위원회				○	7
주민투표위원회				○	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	5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11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	10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영양군	물가대책위원회			○	19
	물가대책실무위원회			○	10
	투자유치위원회			○	10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4
	안전문화운동 영양군협의회		○		19
영덕군	투자유치위원회			○	0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9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10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위원회			○	12
	성희롱심의위원회			○	9
	청소년야영장관리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0
	장애인등의편의시설 심의위원회			○	8
	저소득생활안정자금심의위원회			○	6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		7
	건강생활실천위원회			○	9
청도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	14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			○	8
	온천개발자문위원회		○		15
	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		○		9
고령군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0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	6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	0
	공직윤리관리실무위원회			○	6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	5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고령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9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15
	종합교통발전위원회			○	19
성주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11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0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	10
	소상공인지원위원회			○	10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	13
	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심의위원회	○			8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11
칠곡군	공간정보심의위원회			○	13
	보훈정책자문위원회			○	0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17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4
	노사민정협의회		○		14
	노사민정실무협의회			○	9
	고용심의위원회			○	21
	칠곡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	12
	칠곡군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	6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	12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		24
	칠곡의제21추진위원회		○		19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	7
	도시림등의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9
	산림교육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철곡군	평생학습운영위원회(평생학습협의회)			○	0
	의정비심의위원회			○	10
예천군	예천군정책자문위원회			○	10
	예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	9
	예천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10
	예천군아동급식위원회			○	9
	예천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	8
	예천군물가대책위원회			○	14
	예천군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		13
	예천군투자유치협의회			○	10
	예천군청년발전위원회			○	12
	예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12
	예천군문화정책자문위원회			○	14
	예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	12
	예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	10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	10
	투자유치위원회			○	10
	물가대책위원회			○	18
	인구정책위원회			○	15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	10
	아이돌봄지원사업조정위원회			○	4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9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	8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			13
	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	9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봉화군	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7
	사계절농산물나눔장터운영위원회			○	14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	10
울진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	7
	주요업무평가위원회			○	11
	군보편집위원회			○	6
	공무원국외출장심사위원회			○	6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	11
	울진군 향토문화유산보존심의위원회			○	10
	투자유치위원회			○	14
	물가대책위원회			○	14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	12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			○	6
	금강송 보전위원회			○	9
	온천개발자문위원회			○	13
	경관위원회			○	20
	울릉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	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8
공간정보보안관리위원회				○	1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				○	13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	10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	11

행정안전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기 관 명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동 규정 제4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20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경상북도 및 산하 시·군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경산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등이 상기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였다.(위반사항 : 붙임)

이에 경상북도 및 산하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 김천시장, 안동시장, 구미시장, 영주시장, 영천시장, 상주시장, 문경시장, 경산시장, 군위군수, 의성군수, 청송군수, 영양군수, 영덕군수, 청도군수, 고령군수, 성주군수, 칠곡군수, 예천군수, 봉화군수, 울진군수, 울릉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